

2021. 9.

의안 번호	560
----------	-----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총괄)



목포시의회

목 차

1.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총괄)	1
2.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의회운영위원회)	4
3.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기획복지위원회)	7
4.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관광경제위원회)	11
5.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(도시건설위원회)	15
[붙임] 선서서	19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의안 번호	56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21. 9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- '20년과 '21년도에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
- 우수사례는 보완·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함.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
-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조례

2.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

- 감사기간 : 2021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<9일간>
- 감사장소 :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
- 감사방법 :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

3.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)

- 감사범위
 - '20. 10. 1 ~ '21. 9.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- 대상기관
 - 목포시 (각 실·국·단·과·사업소·동)
 - 목포시의회 (의회사무국)
 - 직속기관 (보건소)
 - 출연·출자기관
 - 민간위탁기관 등

4.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

구 분 상임 위원회	반 편 성			대 상 실 · 국 · 단 · 과 · 소	감사일정	
	인원	반장	반원		서류식	회의식
의회운영 위 원 회	9	정영수	김양규, 김휴환, 문상수, 이형완, 김근재, 김수미, 이금이, 장송지	· 의회사무국		각상임 위원회 감사일정 감안조정
기획복지 위 원 회	7	문차복	이금이, 김휴환, 장복성, 김 훈, 김귀선, 김근재	· 감사실 · 기획관리국 · 자치행정복지국 · 보건소 · 동 행정복지센터 · 출연기관(목포시의료원 등) · 위탁기관(노인복지관 등)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4일간)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3일간)
관광경제 위 원 회	7	김관호	문상수, 조성오, 이재용, 김양규, 박 용, 장송지	· 관광문화체육국 · 경제산업국 · 출연기관(목포장학재단 등) · 출자기관(목포대양산단)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4일간)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3일간)
도시건설 위 원 회	7	김오수	이형완, 정영수 박용식, 최홍림 백동규, 김수미	· 안전도시건설국 · 환경수도사업단 · 도시발전사업단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3일간)	제2차 정례회 회기중 (4일간)

5. 감사방법

-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서류식 감사
- 질의·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
-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병행 등

6. 자료제출 요구사항

- 자료작성 기준일 : 2021. 9. 30.
- 자료제출 기한 : 2021. 10. 15. (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 제출)
- 자료제출 부수 : 35부
 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 및 각 권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제출
 -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 -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

7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- 출석대상공무원
 - 본 청 : 부시장, 국·단장, 실장, 과장
 - 사업소 : 사업소장, 관장
 - 직속기관 : 보건소장
 - 목포의료원 : 원장
 - 민간위탁기관 : 위탁기관대표
- 출석일시 :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
 - ※ 출석대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(담당)은 자진 출두에 의함.

8.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: 별 첨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의회운영위원회)

- '20년 ~ '21년도에 의회사무국의 의회 운영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·분석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, 잘못된 사항은 시정, 개선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
-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

2. 감사시기 : 2021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

(각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 기간중 1일)

3. 감사범위 및 중점 감사사항

- 감사범위
 - '20. 10. 1. ~ '21. 9. 30.까지 추진한 의회 운영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
- 중점 감사사항
 - 예산편성 및 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
 - 주요업무 추진사항
 - 각종 민원처리 현황
 - 의정 홍보활동 홍보사항 등

4.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

- 감사 대상기관 : 의회사무국
- 감사반 편성
 - 반 장(1) : 정영수 위원장
 - 반 원(8) : 김양규, 김휴환, 문상수, 이형완, 김근재, 김수미, 이금이, 장송지 위원
- 감사보조
 - 전문위원 : 한대희
 - 직 원 : 오혜련
 - 속 기 사

5. 감사방법

- 업무보고 청취 후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서류식 감사
- 질의·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

6. 감사일정

- 일 정 : 감사기간 중(각 상임위원회 업무 형편에 따라 일정 조정)
- 장 소 :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

7. 자료제출 요구사항

- 자료작성 기준일 : 2021. 9. 30.
- 자료제출 기한 : 2021. 10. 15일까지(사무국→의회운영위원회)
- 자료제출 부수 : 35부
 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 및 각 권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제출
 -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 -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 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

8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○ 출석대상공무원 : 사무국장

※ 출석대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(담당 및 직원)은 자진 출두에 의함

○ 출석일시 :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기획복지위원회)

- '20년과 '21년도에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
- 우수사례는 보완·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
-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조례

2. 감사시기 :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<9일간>

- 감사기간 : 2021. 11. 15. ~ 2021. 11. 23.

3.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)

- 감사범위 : '20. 10. 1. ~ '21. 9.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
- 대상기관
 - 본 청 : 감사실, 기획관리국, 자치행정복지국
 - 직속기관 : 보건소
 - 출연기관 : 목포시의료원, 목포복지재단
 - 위탁기관 :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종합복지관, 노인복지관 등
 - 동 행정복지센터 : 용당1동 외 22개동

4. 감사반 편성

가. 감사위원

- 반 장(1) : 문차복 위원장
- 반 원(6) : 이금이, 김휴환, 장복성, 김훈, 김귀선, 김근재 위원

나. 감사보조

- 전문위원 : 한덕호
- 직 원 : 박지연
- 속 기 사 : 유선숙

다. 감사대상 부서 지정

반별	감 사 대 상	반원수	반 원	비고
1반	· 감사실 · 기획관리국 · 보 건 소 · 목포시의료원	3	김훈, 김귀선, 김근재	
2반	· 자치행정복지국 · 목포복지재단 ·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종합복지관, 노인복지관 등	3	이금이, 김휴환, 장복성	

※ 상임위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. 23개동에 대하여는 형편에 따라 감사 실시

5. 감사방법

○ 감사방법

-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서류식 감사
- 질의·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
-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병행 등

○ 감사장소 :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 등

6. 감사일정(안) 및 감사 진행순서

월 일	감 사 진 행	감사장소	비고
제369회 제2차 정례회 1일차 10:00	○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 ○ 증인선서 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7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 ○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	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	

7. 자료제출 요구사항

- 자료작성 기준일 : 2021. 9. 30.
- 자료제출 기한 : 2021. 10. 15일까지(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제출)
- 자료제출 부수 : 35부
 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 및 각 권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제출
 - 현지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 -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.

8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- 출석대상공무원 :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
 - 시 본 청 : 부시장, 국장, 과장, 실장
 - 직속기관 : 보건소장
 - 목포시의료원 : 원장, 관리부장, 총무과장
 - 목포복지재단 : 사무국장
 -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종합복지관, 노인복지관 등 : 관장
- 출석일시 :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
 - ※ 출석대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(담당)은 자진 출두에 의함.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관광경제위원회)

-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실·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연·출자 기관의 사무에 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
- 우수사례는 보완·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
-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조례

2. 감사시기 :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<9일간>

- 감사기간 : 2021. 11. 15. ~ 2021. 11. 23.

3.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)

- 감사범위 : 2020. 10. 1 ~ 2021. 9. 30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에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
- 대상기관 : 2개국
 - 관광문화체육국 : 관광과, 관광거점도시추진단, 문화예술과, 교육체육과, 문예시설관리사무소, 체육시설관리사무소, 목포자연사박물관
 - 경제산업국 : 지역경제과, 기업유치과, 일자리청년정책과, 해양항만과, 수산진흥과, 농업정책과

○ 출연·출자기관 : 7개 기관

- 출연기관 : 목포장학재단, 목포국제축구센터, 목포문화재단,
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, 목포수산물유통센터,
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
- 출자기관 : 목포대양산단(주)

4. 감사반 편성

가. 감사위원

- 위원장(1) : 김관호 위원장
- 위 원(6) : 문상수, 조성오, 이재용, 박용, 김양규, 장송지 위원

나. 감사보조

- 전문위원 : 장명희
- 주 무 관 : 박미애
- 속 기 사 : 강지수

5. 감사방법

○ 감사방법

-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
서류식 감사
- 질의·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
-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병행 등

○ 감사장소 :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 등

6.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순서

월 일	감 사 진 행	감사장소	비 고
제369회 제2차 정례회 1일차 10:00	○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 ○ 증인선서 ○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7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 ○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	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실	

7. 자료제출 요구사항

- 자료작성 기준일 : 2021. 9. 30.
- 자료제출 기한 : 2021. 10. 15일까지(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제출)
- 자료제출 부수 : 35부
 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 및 각 권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제출
 -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 -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

8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- 출석대상공무원 :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
 - 시본청 : 국장, 과장, 단장, 소장, 관장
 - 목포장학재단, 목포문화재단 : 사무국장
 - 목포국제축구센터, 목포수산물유통센터,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: 센터장
 -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: 관장
 - 목포대양산단(주) : 본부장
 - 출석일시 :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
- ※ 출석대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(담당)은 자진 출두에 의함

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

(도시건설위원회)

-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에 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
- 우수사례는 보완·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

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
-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에 관한 조례

2. 감사시기 :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<9일간>

- 감사기간 : 2021. 11. 15 ~ 2021. 11. 23

3.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(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)

- 감사범위 : 2020. 10. 1 ~ 2021. 9. 30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에서
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
- 대상기관 : 1국 2사업단 3사업소 (본청 및 사업소)
 - 안전도시건설국 : 도시계획과, 안전총괄과, 건축행정과, 건설과
교통행정과, 자동차등록사무소
 - 환경수도사업단 : 환경보호과, 자원순환과, 환경시설관리과, 수도과, 하수과,
남해환경관리사무소, 북항수질관리사무소
 - 도시발전사업단 : 도시재생과, 도시문화재과, 공원녹지과

4. 감사반 편성

가. 감사위원

- 반 장(1) : 김오수 위원장
- 반 원(6) : 이형완, 정영수, 박용식, 최홍림, 백동규, 김수미 위원

나. 감사보조

- 전문위원 : 윤주명
- 직 원 : 양혜숙
- 속 기 사 : 박소영

다. 감사대상 부서 지정

반별	감 사 대 상	반원수	반 원	비고
1반	· 안전도시건설국(6)	3	정영수, 박용식, 김수미	
2반	· 환경수도사업단(7) · 도시발전사업단(3)	3	이형완, 최홍림, 백동규	

※ 상임위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

5. 감사방법

○ 감사방법

-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서류식 감사
- 질의·응답을 통한 회의식 감사
-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병행 등

○ 감사장소 :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등

6. 감사일정 및 감사 진행순서

월 일	감 사 진 행	감사장소	비 고
제369회 제2차 정례회 1일차 10:00	○ 감사선언 및 위원장 인사 ○ 증인선서 ○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3일차 10:00	○ 서류식 감사 - 서류 및 현장 확인(질의·답변)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6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- 국별 질의·답변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제369회 제2차 정례회 7일차 10:00	○ 회의식 감사 ○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	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	

7. 자료제출 요구사항

- 자료작성 기준일 : 2021. 9. 30
- 자료제출 기한 : 2021. 10. 15일까지(집행부에서 의회로 자료제출)
- 자료제출 부수 : 35부
 -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 명기 및 각 권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제출
 -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
 -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 감사 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.

8.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
- 출석대상공무원 :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
 - 시본청 : 국장, 과장
 - 사업단 : 단장, 과장
 - 사업소 : 국·단장, 소장
- 출석일시 :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
- ※ 출석대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(담당)은 자진 출두에 의함.

선 서

본인은 목포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장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

2021년 11월 일

소 속 : 목 포 시

직 위 :

성 명 : (인)

생 년 월 일 :